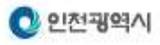


	<b>보 도 자 료</b>		2025년 <b>수도권매립지 종료</b> 
	배포일자	2021년 2월 26일(금) 총 3매	
담당 부서 납세협력담당관 지방세정책담당관	담당자	• 정수기동팀장 나 선 미 ☎440-5771 • 세외수입팀장 류 진 수 ☎440-2571 • 담 당 자 김은영 ☎440-5775, 정현정 ☎440-2565	
사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**인천시, ‘끝까지 추적한다’ 비양심 체납자 강력 징수**

- 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1,074명 1차 선정 -

- 사전 안내를 통한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독려 -

- 11.17일 시, 군·구 및 행안부 홈페이지, 위택스(WeTax) 체납자 명단 공개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2월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고액·상습 체납자 2,007명 중에서 재산 소유자 또는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1,074명은 공개대상자로, 청산종결, 파산, 사망, 경·공매 진행, 거주 불명, 국외이주 등 공개실익이 없는 933명은 공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.
- 시는 먼저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통한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 전개 후 10월 지방세심의

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1월 17일 시, 군·구 및 행안부 홈페이지, 위택스(WeTax)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 할 예정이다.

-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,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.
-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“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출국 금지, 가택수색, 동산압류,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” 이라고 말했다.

<붙임>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

## 참 고

##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

### □ 공개기준(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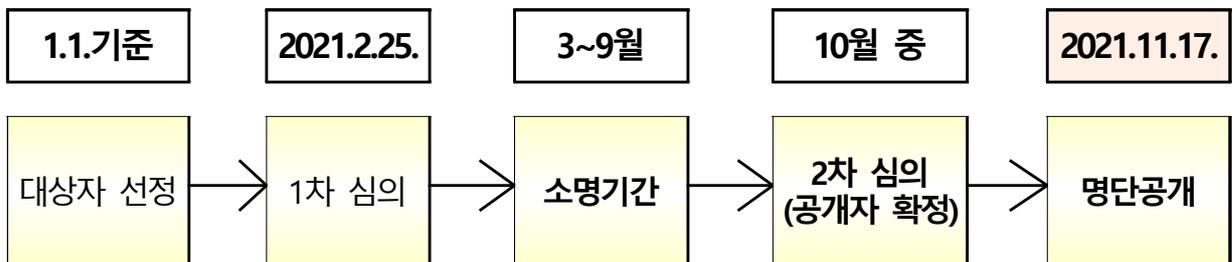
#### ○ 공개 대상

-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, 상호(법인명), 나이, 직업, 주소(영업소), 체납요지 등

#### ○ 공개제외 대상

- 체납액의 50% 이상 납부, 체납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이 이의신청,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
-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
-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### □ 명단공개 일정 및 기한



- 공개 제외 대상자에 해당(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, 사망 등)하는 경우 명단에서 즉시 삭제